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지방공무원복무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2.6.10.)으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시행됨('23.12.11.)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대한 복무처리 근거를 신설하고,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9. 27. ~ 11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6제10호 중 “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”를 “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같은 법 제9조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)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6(공가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 로 허가해야 한다.	제7조의6(공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「 <u>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제9 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 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「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」 제17조에 따 른 대의원회(「공무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 며, 연 1회로 한정한다)에 참 석할 때	10. 「 <u>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제7 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자로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같은 법 제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1. ~ 13. (생 략)	1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3조(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)</u> <u>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</u>

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8